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28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김종양 · 박형수 · 김태호
이중욱 · 박준태 · 한기호
박충권 · 서천호 · 박덕흠
이달희 · 이상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 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중

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철도차량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격 외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할 것
2. 가격,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 납기이행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것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품질 확보와 철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3(철도차량의 조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철도차량의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격 외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할 것</u> <u>2. 가격,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 납기이행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것</u> <u>3. 그 밖에 철도차량의 품질 확보와 철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u>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